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63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전재수 · 임오경 · 박민규
조계원 · 허 영 · 박희승
서삼석 · 이용선 · 박수현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사업(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또는 임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2. (생 략)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u>항만재개발사업</u> 2의3.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8조(사업) ①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 ----- ----- <u>항만재개발사업</u> <u>(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되</u> <u>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상</u> <u>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분</u> <u>양 또는 임대</u> 를 포함한다) 2의3.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